

■ 최신 법령/규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심희정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1. 개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2015년 10월 12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IT기업의 결제 시장 진출, 핀테크 산업 성장 등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영위 가능한 부수 업무를 기존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기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를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업무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었습니다(Positive 방식). 그러나 이번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일정한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부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Negative 방식).

이에 따라 (i)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ii)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iii)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또는 (iv)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서점, 제과점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장 신고를 통하여 부수 업무 영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수 업무의 매출액이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수 업무에 속하는 수익·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 송금)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